

# 수해복구추진상황

농 정 국

# 수해복구 추진상황

지난 8월초에 이어 최근 청주.청원을 비롯한 도내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과 수해복구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임

## □ 호우현황

- 호우기간 : '95. 8. 23 ~ 8. 26
- 강우량 : 도내평균 284 mm (사상최대 日雨量 및 연속강우량 기록)

시군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중평
강우량	448	260	227	192	236	88	321	366	301	313	371

※ 8. 30~31일 남부3군 평균 190mm 강우로 가뭄해갈 및 일부수해  
(옥천 236, 보은 175, 영동 158mm)

## □ 피해상황

- 피해지역 : 12개 전 시군.출장소
  - 우심지역(10) : 청주,충주, 제천,청원, 옥천,영동, 진천,괴산, 음성,단양
- 피해내역
  - 농경지 (유실.매몰) : 1,263 ha (전 395, 답 868)
    - ※ 농경지 침수 6,561 ha
  - 수리 시설 : 267개소 (소류지18, 보119, 용수로110, 양배수장17, 기타3)
  - 축사.가축 : 축사 38동, 가축 317,790마리, 수산물 5종
  - 산림 시설 : 82개소 (산사태 53, 사방시설 10, 임도 18, 휴양림 1)
  - 기 타 : 비닐하우스 166동 22,348평, 양곡창고 2개소 50,280kg

○ 피 해 액 : 202 억원 (총피해액 711억원 = 641+70)

기 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23~26	186	11	17	11	79	-	-	-	7	43	3	15
30~31	16	-	-	-	-	1	6	9	-	-	-	-

## □ 수해복구 추진사항

### 가. 비상근무

- 도·시·군 농정공무원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비상연락, 피해상황 파악, 수해현장 조사 등

### 나. 응급복구

- 농 경 지 :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역점  
· 양수기동원 긴급배수, 침수지 흙양금제거, 병해충방제  
(벼세우기 121 ha, 오물세척 1,959 ha, 병해충방제 4,684 ha)
- 축사 및 가축  
· 축사주변 청소·소독 및 잔해물 철거, 폐사가축 수거 소각·매물
- 수리시설  
· 피해확산 방지위해 인력 및 장비 긴급동원 복구중  
(인력 7,210명, 장비 197대, 마대 31,495대)
- 산림시설  
· 붕괴우려지 비닐피복 18개소  
· 배수로 정비 및 마대쌓기 37개소  
· 도복 가로수 교통장애목 제거 18본

## 다. 피해조사

- 도.시군 합동 피해조사 : '95. 8. 29 ~ 9. 1 (4일간)
- ※ 남부3군 : '95. 9. 2 ~ 9. 3 (2일간)
- 중앙.도 합동조사반 현지확인 : '95. 9. 1 ~ 9. 7

## □ 향후계획

### 가. 항구적 복구대책 수립추진

- 중앙 현지조사후 9월중 복구계획 수립
- 복구 소요예산 중앙지원요청 및 지방비 확보
- 조기 공사착공으로 '96 영농기 이전 복구완료

### 나. 수해복구 일손지원

- 도.시.군별 인력 및 장비 최대지원
- . 제방쌓기, 벼세우기, 비닐하우스 철거, 농로정비, 고추따기 등
- ※ 도청 노력지원(8.28, 9.1) : 제방쌓기 및 고추따기 300명

### 다.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물가지도

- 채소류, 과실류 등 가격 다소상승, 반입량은 큰차이 없음
- 농가출하 독려 및 추석대비 물가 지도점검 (9.1~9.7)

< 가격 및 출하동향 (수해전후 비교) >

	도매가격 (원)		반입량 (톤)	
	수해전	수해후	수해전	수해후
○ 사과 (15kg)	24,000	26,000	10	10
○ 배 ( " )	35,000	40,000	3	4
○ 배추 (포기당)	1,200	2,000	114	112
○ 무 (개당)	800	1,200	53	32

## □ 중앙 건의사항

### 가. 실질적 피해보상제도 마련

- 자연재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거나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 조기 실시

-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정도에 따라 직접 보상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투자촉진

### 나. 재해구호 및 복구비 지원기준 상향조정

- 생계비 보조지원 기준

- 현행 : 농경지 2ha미만 경작자 50%이상 피해시에만 지원
- 개선 : 농지소유규모에 관계없이 피해정도에 따라 전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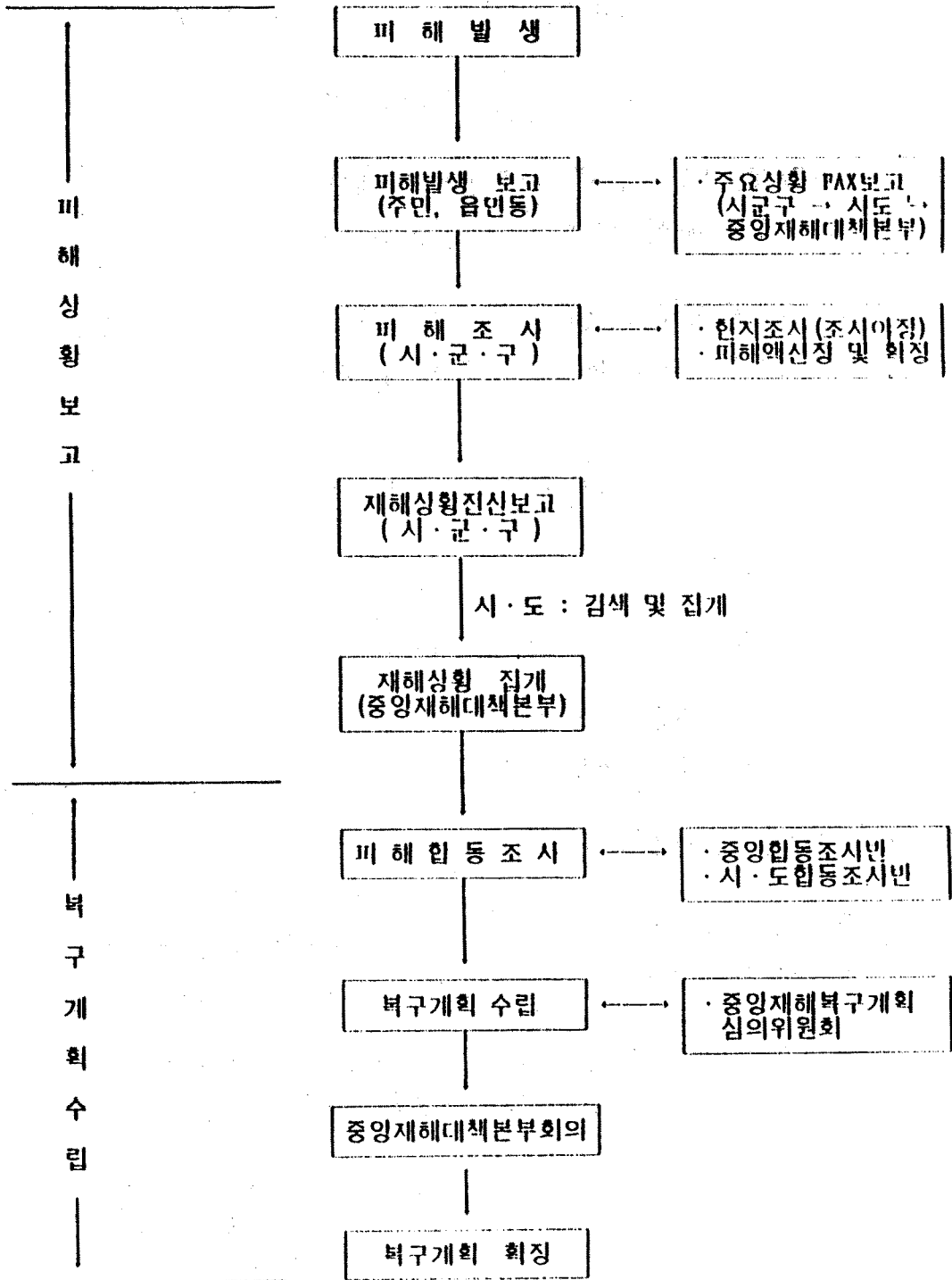
- 농경지 복구비용 지원기준

- 현행 

[	2ha 미만 : 국비 40, 지방비 10, 용자 30, 자담 20%
	2ha 이상 : 국비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담 20%
- 개선 : 농경지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농경지 복구비용의 자부담액을 국고에서 보조토록 지원기준 개선

다. 청원 강의 서평지구 배수개선사업비 조기지원 : 국비 33억원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 재해구호 및 복구기준 (발체)

□ 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 가. 재해구호

### 1.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 위로금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된 자의 유가족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부상자에게 일정금액 지급

### 2. 이재민 장기구호

#### ○ 지원대상

- 주택의 유실, 전파, 반파인 경우 주택소유주에 한함
- 부업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의 축사, 초지, 가축의 80%이상 피해

#### ○ 지원기준

- 응급구호(7일간) : 주택피해자 1일 백미 432g 및 부식비 지원
- 장기구호(1~3개월) : 1일 백미 288g, 정맥 138g, 부식비 및 연료지원

### 3. 생계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주가 사망·실종·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세대
- 지원기준 : 국고 50, 의연금(국고) 50%
- 1급 거택보호세대 : 3,000천원, 2급 자활보호세대 : 2,500천원

### 4. 무상양곡 보조

- 지원대상 : 농경지 2ha 미만농가로서 50%이상 피해입은자
- 지원기준 : 국고 70, 의연금(또는 국고) 30%
- 50~80% 피해 : 양곡 5가마이내, 80%이상 피해 : 양곡 10가마이내

## 나. 개인시설 복구

### 1. 농경지 복구

#### ○ 지원대상

-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시 그 면적이 1지구당 0.5ha(심도 10cm이상) 이상이거나 지구내 1농가당 0.1ha(심도 10cm)이상 실경작자

#### ○ 지원기준

- 2ha미만 소유자의 농경지 : 국고 40, 지방비 10, 용자 30, 자부담 20%
- 2ha이상 " " : 국고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부담 20%

### 2. 농경지 매입

#### ○ 지원대상

- 복구가 불가능 또는 비효과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가능

#### ○ 지원기준

- 국고50, 지방비50% (단, 국고부담은 현금 또는 양곡으로 지급가능)

### 3. 농작물 복구 - 우심 시군

#### < 종자 및 비료대 >

#### ○ 지원대상

- 농경지의 유실.매몰 또는 침수로 인하여 80%이상 피해를 입어 다른 종자를 대파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지원기준 :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1,318천원/ha)

#### < 농약대 >

#### ○ 지원대상

- 1일이상 침관수로 인하여 농약의 살포가 필요한 농작물

- 지원액 : 국고 60, 지방비 40% (논, 밭작물 39,500원/ha)



#### 4 농. 축산, 수산증. 양식등 수산시설물

##### < 비닐하우스 >

- 지원대상 : 비닐하우스 전체면적중 피해부문만 복구
- 지원기준
  - . 중소규모(1ha미만) : 국고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부담 20%
  - . 대 규 모(5ha이상) : 용자 70, 자부담 30%
- ※ PVC철재 : 5,600원/m<sup>2</sup>, 파이프비닐 : 21,500/m<sup>2</sup>

##### < 원 예 >

- 지원대상 : 주생계수단으로 하고있는 경우의 유실.전파.반파
- 지원기준
  - . 중소규모(1ha미만) : 국고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부담 20%
  - . 대 규 모(1ha이상) : 용자 70, 자부담 30%

##### < 축 사 >

- 지원대상
  - . 재해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축사가 유실 또는 전파.매몰될 경우
- 지원기준
  - . 축사 600m<sup>2</sup>미만(중소규모) : 국고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부담 20%
  - . 축사 600m<sup>2</sup>이상(대 규 모) : 용자 50, 자부담 50%
- ※ 우사 124~139천원/m<sup>2</sup>, 돈사 147~187천원/m<sup>2</sup>, 계사 80~95천원/m<sup>2</sup>

##### < 초 지 >

- 지원대상
  - . 재해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으로 하고있는 초지가 유실되었을 경우
- 지원기준
  - . 중소규모(5ha미만) : 용자 70, 자부담 30%
  - . 대 규 모(5ha이상) : 용자 50, 자부담 50%

< 잠 실 >

○ 지원대상

· 주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잠실의 유실.전파.반파

○ 지원기준

· 중소규모(330㎡미만) : 국고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부담 20%

· 대 규 모(330㎡이상) : 용자 70%, 자부담 30%

< 수산중.양식시설 >

○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하여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시설

※ 무면허.무허가등 피해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은 복구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소 규 모 : 국고 40, 지방비 10, 용자 30, 자부담 20%

· 중 규 모 : 국고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부담 20%

· 대 규 모 : 용자 70, 자부담 30%

※ 면허(허가)대장 및 시장.군수의 확인서 첨부

< 농.축산 및 수산생물 입식비 >

○ 지원대상

· 영세축산 및 양잠농민과 어민의 주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생물이 유실.폐사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10, 용자 30, 자부담 20%

· 가축(유실.폐사) : 치가축 입식비

· 수산 중.양식생물(유실) : 치어, 포자, 종패어 입식비

· 누에(유실.폐사) : 당해년도 사육비

※ 한우 - 송아지 1,592, 육성우 1,877천원, 돼지 - 자돈 44천원

젓소 - 암송아지 870, 육성우 1,756천원, 육계 - 412원

## 다. 공공시설 복구

### 1. 수리시설

#### ○ 지원대상

농지개량조합시설, 소류지, 저수지, 소규모수리시설, 방조제등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국가관리 방조제는 국고 100%)

### 2. 사방시설

○ 지원대상 : 산지·야계사방, 사방댐, 임도시설

#### ○ 지원기준

· 국유림 : 국고 100%

· 지방자치단체 소유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유림 : 국고 50, 지방비 50%

#### < 복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

1. 직고 1m미만의 작은제방, 폭 2m미만의 도로등 소규모 피해 및 복구비에 비해 그 효과가 극히 적은 사업
2. 자연하천의 복구사업 (단, 공익상 복구필요시는 제외)
3.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나 수용이 완료된 지역 피해
5. 본래목적이외의 시설물이거나 하가.면허.신고없이 설치한 시설물
6. 다른 법령 또는 보험등에 의해 복구비 또는 보상비가 지원되는경우
7.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향후 1년 이내 단지공사등을 시행하여 철거될 것이 명백하거나,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에 의한 사고